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
국민제안규정 등 4개 법령의
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하여 국민 제안 규정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 관련,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최 요건 발생 시에만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, 감사청구심의회와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를 비상설회의체로 전환하는 한편,

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관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진·화산방재정책위원회와 지진안전시설물인증운영위원회를 지진·화산방재정책위원회로 통폐합하는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 제안 규정 등 4개 법령안의 일부개정에 관한 일부개정령안」을 제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법령별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8. 00. ~ 9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 제안 규정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

제1조(「국민 제안 규정」 개정) 국민 제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4항 중 “관계 공무원과”를 “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되, 필요한 때에는”으로, “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”를 “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한다.

제17조제5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임하거나 해촉(解囑)”을 “해임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)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둔다”를 “구성·운영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따라 위촉되는”을 “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람으로 한다”를 “사람으로 할 수 있다”로

하고,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위촉하는”을 “추천한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7항) 중 “제6항”을 “제5항”으로, “정하고”를 “정할 수 있고”로, “정한다”를 “정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26조를 삭제한다.

제3조(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개정) 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3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법 제16조의3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에 관한 사항

3. 법 제16조의4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

제11조의3 조항을 삭제한다.

제4조(「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」 개정)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둔다”를 “둘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7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전문적·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국민 제안 규정 일부개정령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7조(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) ① ~ ③ (생략) ④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원과 국민제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 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 촉하며,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 다. <후단 신설>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는 3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 임할 수 있다. ⑥ ~ ⑫ (생략) ⑬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 원을 해임하거나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 1. ~ 5. (생략)	제17조(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공무원 중에 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되, 필요한 때에는 ----- -----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.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 한다. <삭제> ⑥ ~ ⑫ (현행과 같음) ⑬ ----- ----- ---- 해임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

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5조(감사청구심의회) ① 지방 자치단체의 주민의 감사 청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주무부 장관이나 시·도지사의 소속으 로 감사청구심의회(이하 이 조 에서 “감사청구심의회”라 한다) 를 둔다. 1. ~ 4. (생략) ②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위원 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 여 9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,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 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. ③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위원 장(이하 이 조에서 “위원장”이 라 한다)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 1. (생략)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	제25조(감사청구심의회) ①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따른 ----- -----.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사람으로 할 수 있다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

당하는 사람 중에서 주무부장 관이나 시·도지사가 위촉하 는 사람 가. ~ 마. (생략)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⑤·⑥ (생략)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감사청구심의회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청구심의회가 주무 부장관 소속인 경우에는 주무부 장관이 정하고, 시·도지사 소 속인 경우에는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제26조(위원의 해촉) 주무부장관 이나 시·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 촉(解囑)할 수 있다. 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. 직무 태만, 품위 손상이나 그	----- ----- 추천한 ----- 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④·⑤ (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) ⑥ ----- 제5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정할 수 있고----- ----- ----- 정할 수 있다. <삭 제>
---	--

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 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 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	
---	--

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의3(지진·화산방재정책위원회 의회의 심의사항) 법 제9조의3 제1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	제8조의3(지진·화산방재정책위 원회의 심의사항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2. 법 제16조의3에 따른 지진안 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에 관한 사항</u>
<u><신설></u>	<u>3. 법 제16조의4에 따른 지진안 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</u>
<u>2.·3.</u> (생략)	<u>4.·5.</u>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
제11조의3(인증운영위원회)	제11조의3(인증운영위원회)
(생략)	(삭제)

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)	제2조(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)
①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발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	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1. ~ 7. (생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	③ ----- ----- -----
1. ~ 6.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위촉하는 사람	<삭 제>
④ 제3항제7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	④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전문적·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⑤·⑥ (생략)	⑤·⑥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	
연 락 처	(044) 205 - 1463
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434
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	
연 락 처	(044) 205 - 1155
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5 - 5184
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	
연 락 처	(044) 205 - 7284